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6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 엄태영·정동만·박형수

유상범 • 권영진 • 서천호

신동욱 • 박덕흠 • 고동진

권성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는 지역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한편, 특별관리구역 내 관리주체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여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협의 기능을 위한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관리구역 제도 도입 이후 설치 근거가 마련된 국회세종의

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특별관리구역 지정대상 범위에 추가하여 기존 구역과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의견조율을 통해 특별관리구역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30조).

법률 제 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설치되는 국회세종의사당이 입지한 지역
- 2. 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이 입지한 지역
- 7.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립박물관단지가 입지한 지역
-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① 건설청장은 제6항에 따른 관리계획 및 그 밖에 특별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	①
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	
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	
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	
<u><신 설></u>	<u>1.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u>
	라 설치되는 국회세종의사당
	이 입지한 지역
<u><신 설></u>	2. 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
	실이 입지한 지역
<u>1.</u> ~ <u>4.</u> (생 략)	<u>3.</u> ~ <u>6.</u> (현행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7.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
	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단지가 입지한 지역

5. · 6. (생략)

- ② ~ ⑤ (생 략)
- ⑥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 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 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후 단 신설>

<신 설>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신 설>

<u>2.</u> ~ <u>11.</u> (생 략)

<u>8.•9.</u> (현행	제5호	및	제6호외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

6	 	 	 	

① 건설청장은 제6항에 따른 관리계획 및 그 밖에 특별관리 구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 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 1. (현행과 같음)
- 2. 제15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

 구역에 관한 사항
- <u>3.</u> ~ <u>12.</u> (현행 제2호부터 제1

1호까지와 같음)